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국가반도체사업본부 설치〉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9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8.
3.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과거 소수의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에 얹던 방식에서 오늘날은 웨이퍼 한 장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규 분야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 발생으로 설계 및 생산 부문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혁신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비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후공정 분야, 패키징,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연관 생태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점유율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반도체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소재·장비 역시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 대비 절대적

인력 규모와 역량도 부족한 실정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 인력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첨단산업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자 국가 방위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첨단산업의 중추인 국가반도체산업은 산업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⑥ ~ 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	개정안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u>제38조제2항</u>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0조(정부위원) ----- ----- ----- ----- -----<u>제38조제2항·제3항</u>----- ----- ----- -----.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u>1명</u>¹⁾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u>국가반도체산업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u>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u>2명</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분야(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25%)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²⁾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³⁾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 수준이고, 팹리스,⁴⁾ 파운드리⁵⁾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취약⁶⁾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⁷⁾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 점유율]

(단위: 억달러)

구 분	지 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2)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6.26. p.2.

3)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대비됨.

4)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 분야를 의미함.

5)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6) 17년에 후발 진입한 파운드리 1위 TSMC와 격차가 크고,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은 약 1% 수준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 '23.4Q): TSMC 61.2, 삼성 11.3, 글로벌파운드리(美) 5.8 등

- 팹리스 시장점유율(% , '22): (미국) 68, (대만) 21, (중국) 9, (일본) 1, (한국) 1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6.26. p.2.)

7)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6.26. p.2.,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24.8. p.8-9. 참고

구 분		지 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DRAM		60.7%	61.7%	58.4%	56.9%	59.1%	60.4%	61.0%
		세 계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72.3%	72.4%	71.6%	71.1%	71.3%	70.6%	73.5%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NAND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시스템반도체		3.0%	3.1%	3.2%	2.9%	3.0%	3.2%	2.3%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광개별소자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7.7%	7.5%	7.4%	8.2%	7.9%	7.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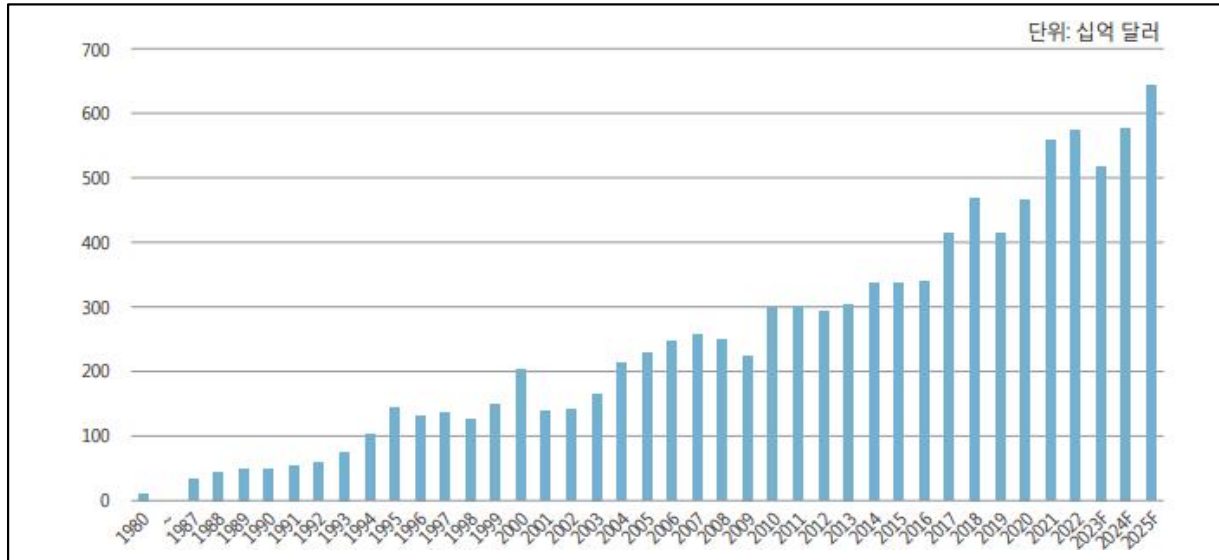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 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⁸⁾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이 보조금·세제혜택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참고: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 p.20.)으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8) 김양평, “국내외 반도체 산업정세와 경기전망”, 산업연구원(KIET), 월간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2023.8. p.8,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6.26. p.1.

상황임.

[세계 반도체 시장 추이]



※자료: 김양평, “국내외 반도체 산업정세와 경기전망”, 산업연구원(KIET), 월간 KIET 산업경 제- 산업포커스, 2023.8. p.9.

현재 정부의 반도체 관련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실⁹⁾ 산하 첨단산업정책관실에 배터리전기전자과·바이오융합

- 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생 략)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1.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2.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4. 섬유·탄소·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5.~75. (생 략)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과·섬유탄소나노과와 함께 반도체과를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¹⁰⁾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7. 전자·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78.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79. 전자·전기 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80. 전자·전기 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1. 전자·전기 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2. 전자·전기 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3. 전자·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4. 전자·전기 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5. 전자·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6.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 90.~98. (생략)

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산업정책실)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제조정책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바이오융합산업과·섬유탄소나노과·화학산업팀·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장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장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⑪ (생략)

⑫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반도체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⑮ (생략)

하고 있고,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¹¹⁾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¹²⁾하고 있음.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4.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② 이차전지 ③ 디스플레이 ④ 바이오 (②~④의 세부사항은 생략))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⑦ (생략)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국내 산업 및 수출에서의 비중, 세계시장의 확대 추세 및 반도체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타 첨단전략산업과 함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반도체 산업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과 기술발전 및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¹³⁾은 국가반도체사업본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¹⁴⁾하고 있는데, 동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3) 의안번호 제2201495호,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14)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1495호,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제9조(국가반도체산업본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는 동 법률안 외에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한 다수의 법률안들이 계류 중인바,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률안 현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대표발의	법률안	주요 기구
2200634	고동진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2201362	김태년 의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가반도체위원회 (대통령 소속)
2201495	박수영 의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산업통상자원부)
2201591	송석준 의원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2202648	이언주 의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2204307	정진욱 의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소속)

둘째, 개정안은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정부조직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1개 과(반도체과)에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로 확대하는 경우, 동 본부에서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조직규모 등을 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본부 조직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본부 조직 규모 현황]

중앙행정기관	본부	본부 내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1관 3국 14과 1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4실 9국 1심의관 39과 3담당관 2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보 2실 3국 6관 32과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관련 업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1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본부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조직이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고, 반도체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지휘·감독 아래 산업 정책, 산업발전과 산업기반의 포괄 정책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산업정책과, 산업공급망정책과, 지역경제총괄과 등)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¹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다수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¹⁶⁾한 사항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기술개발, 조세지원, 산업생태계, 규제정비, 인력수급 등) 중 일부를 담당하는 특정 부처에 본부급 조직을 두는 방식은 부처 간 협업효과 제고에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임.

15)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존재하는데, 단일 부처에 2개 이상의 정무직급 본부 및 차관보를 두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임.

16)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의 경우,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정책조정철괄과,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과, 전력계통혁신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물이용정책과)를 관계 부처로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글로벌 기술전쟁 속 케이(K)-반도체 키울 18조원 금융꾸러미(패키지) 7월부터 개시한다”, 2024.6.26.)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조직 확대에는 동의하며, 그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참고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

- ① (미국) 「반도체과학법」 제정('22.8)을 통해 반도체 제조, 연구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자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❶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❷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❸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❹인텔(美) 200억불('24.3) 등

○ 「국세법(IRC)」을 개정('22.8)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②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총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자원 조성

* ('21년) 6,170억엔, ('22년) 4,500억엔, ('23년) 6,322억엔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❶TSMC 1공장에 4,760억엔 지급(약 4.4조원, '22년), ❷마이크론(美)에 2,135억엔(약 1.9조원, '23.10월)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의 최대 20% 감면 발표('23.12)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 ③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법인세의 30% 한도, '24.7 ~ '29.12)
- ④ (중국) 역대 최대인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의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4.5)

* 과거 사례: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혜택 제공

※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6.26.